



제298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---

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 
분담금 출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0. .

자치행정위원회

#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출연안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우리 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,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시청자미디어 재단과 『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』 체결(2018. 10. 24.)
-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4 회계연도 남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□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요

- 위치 :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
- 규모 : 지상 1~3층/지하1층 (연면적 4,222㎡ , 건축면적 934.11㎡)
- 운영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 (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)
- 주요시설 : 디지털미디어교육실, 드론촬영체험관, 편집실, 사무실 등
- 주요사업
  - 미디어 활용교육 지원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  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대관·대여 지원, TV 및 라디오 제작단 운영
  -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
- 온라인 미디어사업 지원 : 학교 및 기관 원격수업 지원, 온라인 교육·비대면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등

□ 2024년 출연 계획

- 출연 대상 : 시청자미디어재단
- 출연 금액 : **458,320천원**
  - 「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」 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비 중 60%는 방통위 , 40%는 남양주시가 각각 부담
  - 2024년 센터 운영비 1,467,000천원의 40%인 586,800천원을 시에서 부담
  - 시 부담금 586,800천원 중 파견인력 2명 인건비(128,480천원)를 제외한 금액

《 2024년 센터 예산(안) 》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인건비 (A)	경상비 (B)	운영비 (A+B)	비 고
총 소요액	835,100	631,900	1,467,000	
국비 부담	642,400	237,800	880,200	운영비의 60%
지자체 부담	192,700	394,100	<b>586,800</b>	운영비의 40%

□ 기대효과

-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 활용 교육 운영 및 방송제작 시설·장비 제공 등을 통해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와 미디어 복지 실현
- 1인 미디어시대 수도권 미디어 허브 역할로 남양주시 위상 정립

4. 검토의견

- 본 출연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  - 2018년 10월에 체결한 「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」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4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부담금 458,320천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

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%를, 우리 시가 40%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고,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적합하며, 방송·미디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교육을 지역에서 수강할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운영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.

※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: 10개소(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부산, 광주, 대전, 울산, 충북, 세종)

- 2019년 11월에 개관한 센터의 운영이 4년이 되는 만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미디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< 연도별 출연금 예산지원 내역 >

(단위 : 천원)

합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2,406,410	240,000	381,100	434,470	443,460	449,060	458,320

- 참고자료 :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

## □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협약

###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협약

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시청자미디어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한다)이 협력하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,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·지원한다.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한다.
- ③ 재단은 미디어교육시청자 방송제작소외계층 방송접근 지원 등 센터 사업 관라·운영한다.

**제3조(설립공간)** ① 남양주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급공공주택지구 내 문화공원 일원에 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신축, 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  
② 사용료 산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.

#### **제4조(센터 설립 실무협의회의 구성)**

- ① 센터 설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경기도, 남양주시, 재단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 실무협의회는 센터 설립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.
- ②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체결 이의의 전문기관을 실무협의회에 추가할 수 있다.

**제5조(운영비 등의 분담)**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(이때, 운영비는 신규 시설장비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)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%, 남양주시가 40% 각 분담하되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**제6조(관리 및 운영)** ① 재단은 센터 관라·운영하며, 관라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, 일부를 남양주시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다.  
② 관라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시 재단은 정부의 권장정책에 따라 경기 거주도민을 포함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에 노력한다.

**제7조(발전협의회 구성)** ① 재단은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.

-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, 교육기관, 미디어 관련 학계·단체·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방송통신위원회·경기도·남양주시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. 이때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50%를 추천한다.

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·정책·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,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내부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해석)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9조(분쟁)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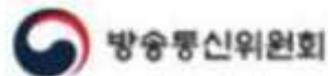
제10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0월 24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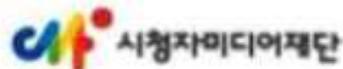
조 광한  
시장 조 광 한



허 욱  
부위원장 허 욱



이 재명  
도지사 이 재 명



신 태섭  
이사장 신 태 섭

**□ 지방재정법**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[제17조제2항](#)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